the new lr opping Iran's advance by armed Sh.

프로그램 |

시간		세부 내용		
09:30~09:50	20'	● 개회(사회 : 양윤선 국회방송 아나운서) - 내빈 소개 - 개회사		
09:50~10:10	20'	● 발제(20분) -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변호사)		
10:10~11:10	60'	● 종합토론 ● Q&A	□ 최장 -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6명) -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부회장 - 황성현 변호사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11:10~11:20	10'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목차 🛚

[발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란?

-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김진욱 변호사 -

[토론]

- I.국가 운영 틀이 바뀌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는 적폐의 대상이 된다.
 - 조맹기(서강대 명예교수) -
- Ⅱ. 자율규제로는 근절할 수 없는 가짜뉴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부회장 -
- Ⅲ. '가짜' '뉴스' 에 대한 고찰
 - 황성현 변호사 -
- IV.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방안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 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통신심의 관련규정
 -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 VI.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

[발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란?

-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김진욱 변호사 -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김진욱 변호사 -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란?

목 차

- ① 가짜뉴스
- ② 표현의 자유
- ③ 가짜뉴스의 문제점
- ④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및 규제의 법적 근거
- ⑤ 제언





① 가짜뉴스

□ 가짜뉴스의 정의

-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 가짜뉴스의 역사

- 인류의 역사는 곧 가짜뉴스에 대한 투쟁의 역사와 다름이 없음.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음.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에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린 일은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임.
-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돼온 가짜뉴스 사례들과는 다름.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형식을 띠고 나타남.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 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되기 시작함.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 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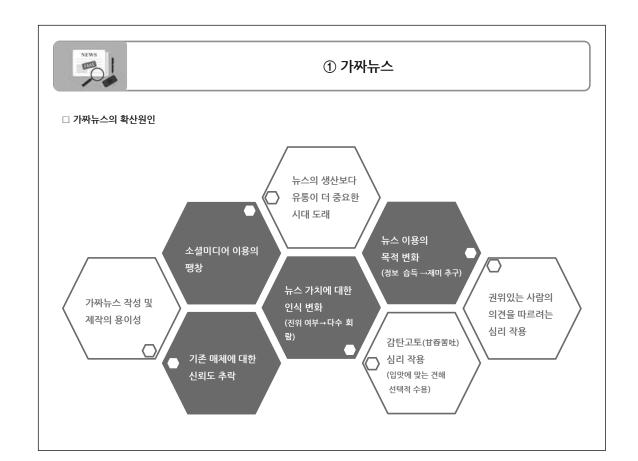
아예 없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거나 거짓정보를 사실인 듯 포장해 유통하는 뉴스 기사



허위보도(虛僞報道)를 뜻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건처럼 꾸미 뉴스



"2016년 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post-matis 참진실) 선정" "2017년 콜란스사건, 올래의 단어로 케이크 뉴스(fake news) 가짜뉴스)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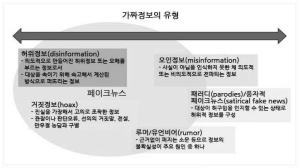






① 가짜뉴스

□ 가짜뉴스의 유형



↑가짜정보의 유형〈출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표 자료〉

□ 가짜뉴스의 특징

- 내용적 측면 :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건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정보임. 하지만 모든 잘못된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언론사의 오보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지만 일부러 거짓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오보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음.
- 형식적 측면 : 실제 뉴스와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음. 개인 웹사이트를 언론사 홈페이지처럼 제작할 수 있으며 기자의 바이라인이나 언론사 제호 등을 삽입하는 등 뉴스의 틀과 유사하게 작성 가능하므로 형식만으로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②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헌법」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은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함. 언론은 담화·토론·연설·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도화·사진·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함.
-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액세스권·반론권·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
-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문제됨.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임.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임.
-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흑색리본의 패용·연좌데모·피켓팅 등)도 표현의 자유 중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됨. 비언 어적 행동이 사상·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한 상징적 표현권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음.



②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

-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할 수 있음.
-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불가피함. 그 러한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가능하려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여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알 권리·액세스권·반론권과 더불어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음.
-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적·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됨.

□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설·청구권설·제도적 보장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모든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임.
-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인격발현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서는 널리 정보를 수집·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임.



② 표현의 자유

□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 알 권리의 의의
- 알 권리(right to know)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일반적'이란 신문·잡지·방송 등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보'란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함. 그것은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함.
- <u>알 권리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u>를 가지고 있음. 민주국가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여론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없으며 풍부한 정보 없이는 책임 있는 의사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알 권리의 내용
- 언론·출판의 자유 중 의견 또는 사상의 표현과 그 전달의 자유가 내어 보내는 쪽(신문·통신·방송 등)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알 권리는 받아들이는 쪽(일반대중)의 자유를 의미함.
- 알 권리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임.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독일기본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1966년에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어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는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국민이 자유로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음.
-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알 권리는 (1) 민주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2) 인격의 자유로운 발 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입권을 의미하므로, <u>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의 원리),</u> 제10조(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 '<u>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u>이자 국민주권의 권리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기본권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므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





② 표현의 자유

□ 가짜뉴스 vs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제재 찬성 입장

- 가짜뉴스 자체가 공중 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로,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
- 명예훼손, 정치적 편향성,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 훼손 등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는 정부 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 고 경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
-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한 번 유통된 정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려움. 만약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신뢰할수 없는 무법지대가될 것임.
-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라면 단속과 처벌에 적 극적으로 임해야 함

가짜뉴스 제재 반대 입장

- 가짜뉴스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 압**과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음.
- 허위사실 유포로 사기나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 등 불법 적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 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마땅함.
-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공공의 선보다 우선하는 가 치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처벌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고 검열해서는 안됨.
- 정부 개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지난 2016 년 총선 당시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명목 하에 삭제된 1만 7000여 건의 글 가운데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적 풍자나 의혹도 섞여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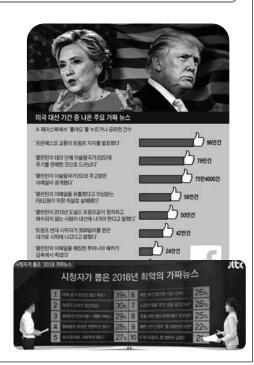
③ 가짜뉴스의 문제점

□ 가짜뉴스의 문제점 → 정치·사회적 폐해 가능성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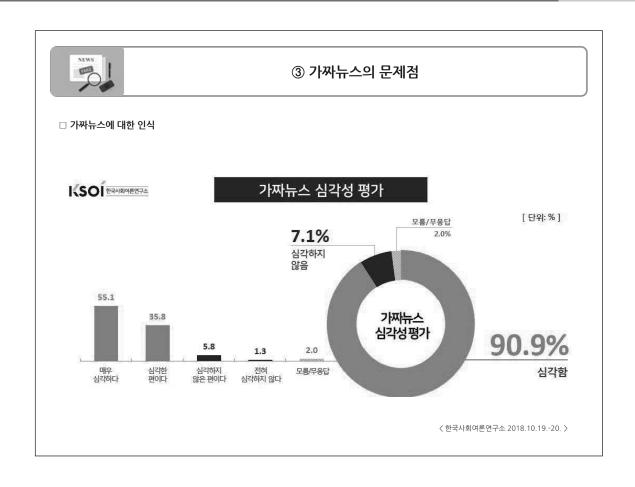
- 가짜뉴스를 사실로 착각하여 기존 언론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에 이용하거나 정치인 등이 자신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할 때 그 파급력이 강해짐. 즉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요 언론사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하거나 리트윗 등 공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사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됨
-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흑색선전에 사용될 수 있음. 과거 구전을 통하던 것에서 '기사'의 형식을 가지게 되면서 보다 선정적이 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에 가짜뉴스 가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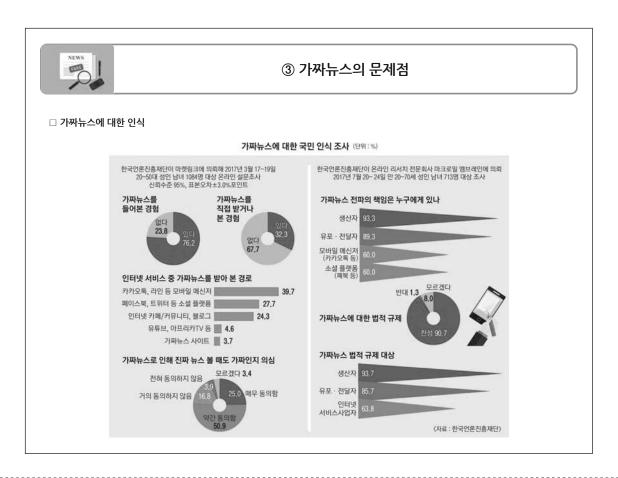
Ex) 힐러리 클린턴-테러단체 ISIS에 무기 판매, 도널드 트럼프-프란치스코 교황의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

- 한국의 경우 가까운 지인들끼리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쪽지형 지라시나 깔방('짤림 방지'의 줄임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글을 올리거나 게시판의 주제에 벗어난 글을 작성했을때 자신의 글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의 유통이 활발한 경향을 보임. 이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외신기사를 인용하거나 해외 석학의 의견을 정보원으로 하여 실제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다수의 허위·비방 정보 및 미확인 스캔들을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형식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유포하는 경향을 보임.













④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및 규제의 법적 근거

□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포털	주요 내용
NAVER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공사업자 검증 작업, 허가 받은 매체만 뉴스 공급 가능.
kakao	기능. - 블로그 등 허위사실 유포는 신고 시 블 라인드 처리 등 조치.
facebook	-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서 등록된 언론사 기사를 팩트 체크 후 라벨링. 국내에는 뉴스 검증 기관 없어 적용 검토 중. -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 시작.
Google	- 뉴스 임의 큐레이션 없음. 검색 알고리 즘에 따라 노출. - 2016년 10월부터 팩트체커 기능 일부 국가 도입, 순차 확대 예정. -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 시작.

지역		주요 내용	
유럽연합		가짜뉴스 유포 SNS 업체 단속 추진 - 소식 전파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 정치적 목적 개인정보 수입 제한	
독일		네트워크 운용 개선법 시행(2018년) - SNS 업체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 벌금	
영국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 설립 추진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에도 대응)	
프랑스		가짜뉴스 대응 입법 추진 - SNS 광고주 및 수익처 공개 의무화 - 선거기간 가짜뉴스 긴급 차단·삭제	
이탈리아	ш	경찰, 가짜뉴스 단속단 신설(2018년) 정부·SNS, 학생 대상 가짜뉴스 판별법 교육	
미국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의식법 제정(2016년)	
캐나다	*	온타리오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말레이시아		가짜뉴스 유포 징역·벌금형 추진 -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2만8000달러	
인도네시아	7	전담기구(국가사이버암호청) 신설	



④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및 규제의 법적 근거

□ 가짜뉴스 규제 관련 현행 법제 및 그 한계

-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 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국가보안법 등이 있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율함.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인 경우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음.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허위의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형법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책략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제313조(신용훼손)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1항 제2호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제70조 제2항을 통해 정보통신에서 그러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오프라인의 행위에 대해서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은 제82조의4(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정보통신망와 오프라인에서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 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하고 그 위반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은 제47조(벌칙) 제2항에서 자신 또는 타인이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동 조 동 항의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명백한 범죄 외에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





④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및 규제의 법적 근거

□ 가짜뉴스 관련 주요 처벌 사례

🏂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주요 처벌 사례	자료: 법무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성관계(인터넷TV 방송)	징역 1년6개월
■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피해자는 모 국회의원 내연녀(트위터)	징역 6개월
■ 손연재 선수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장면 삽입 로비(포털 게시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음 직전 성행위(일간베스트 게시판) 	징역 1년
■ 모 방송인의 여자친구는 '클럽 죽순이' 등 거짓글(인스타그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 세월호 희생자로부터 구조 메시지 받은 것처럼 거짓글(페이스북)	벌금 300만원
 '테마주' 부양 목적 유력 대선후보 지지선언 거짓글(주식 토론실) 	벌금 300만원
■ 투자유치 목적 업체 관련 거짓글(인터넷 사이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도박사이트 홍보 '낚시글'(도박 사이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경찰청 관계자 사칭 선물거래 관련 거짓정보 발송(문자메시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1 1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 표시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 메르스 의심환자로 ○○○병원 출입금지 거짓글(네이버 밴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자명예훼손	
■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 등 거짓글(일간베스트 계시판)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④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및 규제의 법적 근거

□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 관련 국내 법안 발의 현황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4625/2018,7,30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495/2018,5,9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492/2018,5,9발의)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927/2018,4.5발의) 가짜정보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92/2017.8,4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 의무 부과(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짜뉴스 유포자는 온라인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처벌(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194/2017.7.26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가짜뉴스 미삭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7095/2017.5.30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가짜뉴스 미삭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주호영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안번호 2006804/2017.4.25발의), 언론중재법개정안 (의안번호 2006805/2017.4.25발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의안번호 2006807/2017.4.25발의)

-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708/2017.4.11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통신망서비스사업자의 거짓정보 유통 금지,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983/2017.3.3.발의). 공직선거법개정안.

- 중안선관위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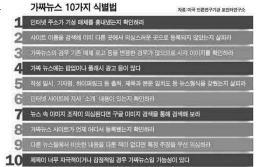


⑤ 제 언

□ 가짜뉴스 대응

- 언론의 팩트체크
- 최근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잇따라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며 언론의 소명을 사실보도에서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역할 까지 확대시켰음.
-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주는 것은 언론에 필요한 역할"이라며 언론의 팩트체크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율규제
- 기업의 경우에는 영국 케임브지리대의 가짜 뉴스를 감별할 수 있는 백신 연구와 미국의 '풀 팩트'(Full Fact)의 페이크 뉴스 체크용 모바일 앱 개발 등과 같이 자율적인 규제가 중요함. 기업이 일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여 자체적인 규제를 실행한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표현의 자유의 제약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가짜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용자의 합리적 의심
- 수용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뉴스를 소비해야 함.

무심코 내가 생산·공유한 가짜뉴스가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사실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함.





[토론 I] 국가 운영 틀이 바뀌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는 적폐의 대상이 된다.

- 조맹기(서강대 명예교수) -



국가 운영 틀이 바뀌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는 적폐의 대상이 된다.

- 조맹기(서강대 명예교수) -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고 난 후 9번의 헌법 개정을 했다. 그 내용은 수정이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바뀌지 않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작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온갖 수단을 쓴다. 자유를 빼면 모든 사회체제의 운영 원리가 바뀌게 된다. 새로운 룰에 따르면 기존의 운영원리는 적폐가 되고, 가짜 뉴스가 된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격화시킨다. 그들의 언급한 내용은 곧 가짜뉴스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자본주의 언론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오락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론은 선전, 선동, 조직자의 기능을 한다. 당이 앞서고, 그 당의 계획에 따라 언론은 부역자 역할을 한다. 선전, 선동 기능에 따라 인민은 세뇌를 시킨다. 사회주의 국가는 지상의 천국이고, 무오류의 사회이다. 그들은 낙원에 살고, 자본주의 국가는 '실낙원'으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상화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기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자유주의는 밀턴(John Milton)은 1644년 『Areopagitica》』에서 표현의 자유를 논하면서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the open market of ideas)를 소개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동조절 장치 (steering)를 주장한 것이다. 시장에서 아이디어는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를 설명하여, 정의와 진실을 확보하게 된다. 밀턴은 공론장만 허용된다면 경쟁을 통해 이성이 작동하고, 진실이 규명이된다고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사회는 다원주의 경향을 띠고 된다.

밀턴의 원리는 스탈린과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시장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는 자유주의하에 언론자유의 영역을 이야기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헌법 정신에 따른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서울 장바구니 물가, 스위스이어 세계 2위〉(한경진, 《조선일보》, 2019. 9.17,)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물가는 마이너스 수준으로떨어졌지만, 체감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다. 정부 공식 소비자물가와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이 격차는 2.1%포인트로 2013년 10월(2.1%)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 컸다."라고 했다.

국민이 삶이 팍팍하다는 소리가 된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정부가 하는 짓이 이렇다. 갈수록 분명해지는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만으론 안 된다.'》(사설, 《한국경세 신문》, 2019.9.17.)로



"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 주변에서 맴돌 뿐 생산투자처로 흘러들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한국경제 보도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2분기 통화승수(한은이 공급한 돈이 경제현장을 돌면서 창출하는 통화량의 배수)가 15.7로 역대 최저치를 추락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돈을 풀어 계속 퍼주기를 하고, 기업은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점점 궁핍화 길로 들어가는 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文 대통령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소득주도성장 더 적극 추진'〉(정우상, 《조선일보》, 2019.09.17,)로 정우상 기자는 "문 대통령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정부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데 지엽적인 것으로 경제 지표를 말하고 있다. 〈 [김광일의 입] 문 대통령 자신감, 근거가 뭡니까?〉(김광일, 《조선일보》, 2019.09.17.)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 수보회의 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발언이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팩트체크 들어가 본다. 먼저 고용을 보자. 문 대통령은 늘어난 취업자가 4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45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 명이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23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그 내용을 벗겨보면 노동 생산성이나 미래 지향성을 거론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이런 노인들이 하는 일은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지 같은 일들이다."라고 했다.

이 현실을 두고 200인 교수 일동은 〈교수시국선언 기자회견〉(프란치스코 회관, 2019.05)로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서명 교수들에 의하면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가짜뉴스는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 '소셜 미디어 또는 전통적인 뉴스 기사 등을 통하여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로 정의된다(오일석·지성우·정운갑, 2018, 160; 기현석, 2018, 241쪽).

문재인 청와대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 경제 현실에 개입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청와대는 가짜뉴스 공장을 차려놓고 있다. 청와대가 '프레임'(enframing)을 하면 출입처 중심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그 프레임 한 것을 '해체'(deframing)를 한다. 그때 자유 시장에서 그 정책이 자기검증원리(the self righting principle)를 작동시키게 된다.

실제 청와대는 '오만과 독선'으로 '프레임'를 시도한다. 그 프레임을 바탕으로 대부분 언론은 선전, 선동을 일삼고 그 강도를 높이면 세뇌를 시도하게 된다. 국민은 청와대의 주장에 어리둥절하다. 정보가 폐쇄된 형태에서 공개되니, 가짜뉴스 소동은 전 사회를 휘감게 된다.

리프만(Walter Lippman)은 "자유는 가짜뉴스를 공동체에서 걸러낼 수 있을 때 지켜진다."라고 했다. 공개시장의 자동조절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은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체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들의 약점을 들추지 못하도록 성역(聖域)을 계속 만들어간다. '소득주도성장',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원인', '탈원전 정책', '태양광 설치', '최순실 태블릿 PC' 등 굵직한 사건이 거의 성역으로 남긴다. 성역으로 터부(taboo)가 만들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질식당하게 한다.

김 변호사는 '가짜뉴스 전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93.3%가 생산자에게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마크로밀 멤브레인에게 의뢰 2017년 20~24일 만 20-70세 성인 남녀 713명). 동 조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에 '찬성 90.7%'라고 했다.

그렇다면 규제법이 실제 작동하는가도 의문이다. 정치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 기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보험을 들고 있다. 과다한 규제는 개인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취재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들은 가치, 태도, 믿음에 근거한 취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갖가지 법이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기술적 영역을 제외하고 「신문법」,「방송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보안법」,「방통위원회 심의규정」 등이 있고, 이들에 대한 개정안이 또한 준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s)이라고 그 통제의 근거를 말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전, 선동을 원용한다. 그들은 사회의 엘리트가 여론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미디어 권력을 당연히 제약해야 한다.

그러나 빈번히 그 엘리트의 휘두르는 권력이 지나치다. 이들 외에도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는 것으로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안」,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안」등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향은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다. 세계 경향은 탈규제화로 가는데 국내 언론법은 계속해서 미디어 산업을 옥죈다. 국회와 행정부는 법 만능 사회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공무원 많아지고, 규제기관이 팽창한다.

발제자가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 관련 국내 법안 발의 현황'에서 10명이 그 분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물론 언론자유가 내면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종교와



언론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했다. 더욱이 국가보안을 다루는 경우까지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이 아니라면, 언론자유를 우선시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종교, 양심의 자유를 언론 자유와 함께 논한 점이다.

물론 '가짜뉴스'는 정치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명예훼손으로 공직자의 법적 보호를 최소화한다. 국내법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상규나 윤리적인 부분도 제약의 근거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18 망언'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의 집권여당이 '기자의 보도에 문제를 삼는 것'(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김상겸, "민주주의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미디어연대 토론회, 2019.4.19, 10쪽).

최근 경향은 공공직 종사자에게 명예훼손죄를 그렇게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 프라이버시의 종말, 프라이버시의 죽음, 프라이버시의 상실 등이 그 SNS 등 전자 미디어의 속도감으로 인해 파생된다. 그럴지라도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가짜뉴스'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루어진다(기현석, 2018, 248쪽). 미 연방대법원은 "1964년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민사배상에 제한했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권리로 간주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의 자유 행위는 공적 자유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 선거와 같은 공적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방대법원은 Cox Broadcasting Co v. Cohn 사건에서 "주(州)는 공익목적으로 공개되는 공식법원 기록에 포함하여 보편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Cox Broadcasting Co. v Cohn, 420 U.S. 1975, para 46; 이형석·김정기, 2019, 172쪽).

미국 '프라버시권은 부존재 원칙'(No privacy in public rule)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¹⁾ 그 만큼 미국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다. 반면 국내법은 신분집단 그리고 체제의 유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문화가 프라이버시권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와 윤리, 그리고 공개장의 자동조절장치를 더욱 신뢰하다. 그렇더라도 국내의 규제는 과다하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 만능사회의 비극이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있다.

¹⁾ 항상 프라이버시권이 언론자유와 맞부딪칠 때 균형점을 찾는다. 그 내용은 "온라인상에 비공지성은 개인의 프라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지성이 높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지성이 낮으면 즉 비공지성이 높으면 개인의 프라이버 시권이 강화된다는 이론이다(Woodrow Hartzog and Frederic Stutzman, "The Case for Online Obscurity", California Law Review Vol. 101, 2013, p.10; 이형석·김정기, 2019, 178쪽),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방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원리를 경시할 수 없다.



국내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거나 공포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기현석, 2018, 243~244쪽).

유튜버도 언론인으로 간주하는 한 그 법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유튜브는 다른 매체와 달리, GPS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감이 더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당연히 가짜를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게 된다. '가짜뉴스'일수록 그 유통속도가 빠르다 (Soroush Vosoughi, Deb Roy, Sinan Aral ,2018,3, pp.1146~1151; 기현석, 2018, 254쪽).). 그들의 연구는 "'가짜뉴스'의 전파속도는 정치뉴스의 경우에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확산 된 양상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의 전파속도가 더 빠르고 특히 가짜 연예인 이야기, 정치뉴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에 비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깊이, 더 넓게 퍼진다."라고 한다.

그럴지라도 미국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가짜뉴스의 유통으로 공동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공동체가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는 자유는 있고 책임이 없어진다. 그 사회가 얼마나 지속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문제인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공장을 차려놓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들의 약점을 들추지 못하도록 성역(聖域)을 계속 만들어간다. '소득주도성장',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원인', '탈원전' '태양광"' '최순실 테블릿PC' 등 수 많은 굵직한 사건이 거의 성역으로 남긴다. 성역으로 터부 (taboo)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

북한은 수렴될 수 있어도 국제적 경향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 전 부통령 후보자 고어(AL Gore)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초고속정보망'(an information superhighway)을 세우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Lucy Kueng, Robert G. Picard, Ruth Towse, 2008, p.104). 그 초고속 정보망의 디지털 하부구조는 경제, 노동, 교육, 의료 그리고 미디어를 통째로 바뀔 것을 예견했다. 뉴스라고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영역이 1993년 이후 WWW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들 영역이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서고 융합이되는 현실이다. 그 원칙이 1994년 3월 설명이 되었고, 고어의 초고속정보망 주장은 유럽에서 「반개만보고서」(Bangemann Report), 즉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EC, 1994))에서 유럽의미디어 정책에 반영되었다. 고어의 정책이 현대 서비스 경제의 경쟁과 효과를 자극시키게 된 것이다.

탈규제, 즉 산업의 탈규제의 힘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변화를 위한 배경을 제공하고, 촉매제역할을 했다(Lucy Kueng, Robert G. Picard and Ruth Towse, 2010, pp.38∼39). 이 원리는 지난 세기동안 은행, 대중 교통수단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었으나, 국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탈규제화를 가져와



디지털 혁명의 촉매제로 역할을 했다. 더욱이 1996년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The US Telecom Act oof 1996)으로 텔레컴의 영역에서 재구조화하게 했다고, 방송분야에서 합병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 법은 방송에서 공정성까지 풀었다. 이에 고무되어 WTO 텔레커뮤니케이션 협정(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Telecommunications Accord, 1998)은 진입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변화무상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 시장영역이 전개된다. 이 기술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엘리트가 '국가이익'으로 규정하는 제3세, 사회·공산 국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권력의 의지'(the will to power)로 보면 권력이 재분배되는 것이 맞다.

일정한 부분 시장에 맡겨서 자동 조절 상황에서 플레밍(framing)을 할 요가 있는 것이다. 그때 프레임이되는 '강철 팩트'(a strong hard fact)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게 된다. 사회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보다 '강철 팩트'로 취재 윤리를 강화하면 된다.

강철 팩트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일 때 의미를 지닌다. 사실의 정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문학적소용의 좋은 책 읽기 습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성의 잣대도 사실이 진실로 가기 위한 조건이 된다. 뒤르깽(Emile Durkheim)은 '사회적 사실'을 집합표상으로 '강제성, 보편성, 전달성' 등 요소를 가진 것으로 봤다. 이 강철 팩트는 집합표상, 도덕, 윤리라는 측면이 부각된다. 이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지키지 않으면 강압이 작동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통용 되고, 이게 전달이되면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강철 팩트가 아니라면 사실의 과학화를 시도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증거, 즉 '강철 팩트', 즉 정확한 증거이다. 미국의 초기 대중신문 맥락에서 콜레라균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콜레라 균(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다. 출입처에서 얻기 힘들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의 현장에서만 정확한 진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요즘 사과 보관 창고는 1년 내내 같은 수준의 질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컴퓨터에 추수 때와 꼭 같은 온도, 습도, 심지어 바람까지 동등하게 불어 넣어준다. 그 입력한 데이터는 정확한 '강철 팩트' 역할을 한다. 그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행하면, 1년 내내 그 사과 맛을 예측할 수 있다. 기자가 취급하는 강철 팩트는 그런 것을 갖고 '프레임'를 할 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그 증거가 법정에서 나오면 그렇게 판결은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다.

과학 보도가 인공지능시대(AI) 시대는 더욱 각광을 받는다. 이는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최소한 사건의 논리적·예측적·분석적 도구를 사용한다(Everette E. Dennis and Melvin L. Defleur, 2010, p.5). 그 내용은 "①조사로부터 도출되는 관계성의 전제(interrelated propositions)를 알아낸다. 이는 사건이 실제 작동하는 것에 대한 묘사, 관계성으로 작동의 원리를 알아낸다. ② 사전 상황이 결과를 가져다준 결과에 대한 설명(explanations)인데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③사건을 풀이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하는 논리적 예측(logical predictions)으로 더욱 세심한 관찰 하에서 얻어진다, ④ 조사에 의한 정확성(accurate)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확성은 교정하고, 다시 검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얻어 진다."로 규정 했다.

인공지능시대(AI)에 뉴스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강철 팩트를 보존하기 위해 개인성, 즉 가치, 태도, 믿음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문직 윤리, 즉 전문성, 역동성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확고한 교육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을 만들어 엉뚱한 재판을 양산하면 사회갈등은 더욱 증폭하게 되고, 정치공학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그래서 필요하다. 자기 검증 원리가 작동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는 북한 같은 전체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 틀이 바뀌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는 적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기현석,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아주법학》, 제 12권 제3호, 253쪽,

김상겸, "민주주의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미디어연대 토론회, 2019.4.19, 10쪽으일석·지성우·정운갑(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이형석·김정기(2019),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 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미국연방 대법원과 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법학》, 제35집 제1호.

Dennis, Everette E. and Melvin L. Defleur (2010), Understanding Media in the Digital Age, New York: Ally & Bacon.

Kueng, Lucy, Robert G. Picard and Ruth Towse(2010), The Internet and the Mass Media, Los Angeles: Sage.

Vosoughi, Soroushim, Deb Roy, Sinan Aral(2018.03).,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ocial Science No 359, pp.1146~1151.

[토론॥] 자율규제로는 근절할 수 없는 가짜뉴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부회장 -



자율규제로는 근절할 수 없는 가짜뉴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부회장 -

1. 머리말

미디어 업계 종사자, 저널리즘 연구자, 정치권 할 것 없이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큽니다. 특정 인사나 기업, 제품 등에 관한 왜곡된 뉴스 또는 정보는 해당 인사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거 나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왜곡, 악성 루머도 마 찬가지입니다.

흔히 Fake News로 불리는 가짜뉴스는 사실(Fact) 또는 진실(truth)에 상반되는 뉴스를 의미하며, 뉴스 (기사) 형태를 가장하거나 유사한 형식으로 유포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네티즌이 아무런 의도 없이 단순히 펌 나르기 수준의 가짜뉴스 유포에 나서기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의 네티즌이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인터넷 검색, 게시물 게재 차원에서 1회성 행위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집단, 또는 조직화된 개인에 의한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시의성, 공간성(행위의 공간적 범위) 등의 경중을 따져서 이러한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입는 개인, 집단 등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 언론(인)과 비언론(인)으로 구분해 그에 따른 사회적 대책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언론(인) 영역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2. 언론(인)의 가짜뉴스 논란

1) 사례

□ 사례1.

SBS 뉴스 "권 여사, 1억원짜리 시계 2개 논두렁에 버렸다" / SBS 뉴스 2009.05.13. 20:15



〈8뉴스〉

〈앵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쳐

□ 사례2.

조선일보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 출처 :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 6면 기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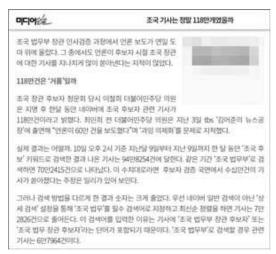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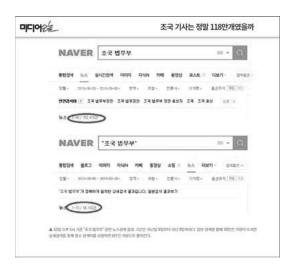
출처: 네이버뉴스 현송월 처형 관련 보도 화면 캡쳐



□ 사례3.

조국 기사는 정말 118만개였을까 / 미디어오늘 2019.09.10 18:19 [팩트체크] 상세검색 설정하거나 날짜별로 나눠 검색 후 더하면 6만~7만개 수준, 네이버 제휴 매체 2배 늘어난 점도 감안 필요





출처: 미디어오늘

2) 개선방안

- 팩트체크 운영 강화 : Jtbc,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등
- 왜곡보도, 허위보도, 오보 사후 제재 수단 : 언론중재법 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인터넷 뉴스서비스 포함해야 (김영란법에서 제외됨)
 -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함해야 (김영란법에서 제외됨)
 -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 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함, 매출 규모 10억원 이상의 인터넷신문사로 확대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정보도 청구 가능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에서 제외함
 -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뉴스 알고리즘 공개, (실시간)검색어 배치 기준 공개 등
 -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자체 생산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제목, 내용 등의 수정을 해서는 안 됨
 -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언론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해야 함. 뿐만 아니라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5조(편집위원회),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켜 포털뉴스의 사회적, 공공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함. 현재의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논란은 이 위원회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받는 법률이 없으므로 포털뉴스 입점, 퇴출, 검색제휴, 전재료 등 논란과 관련 공정성 시비, 전재료 적절성 시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음.



☞ 신문법을 개정해야 뉴스 알고리즘 공개, 검색어 공정성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공공적 책무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뉴스 입점과 관련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 불공정 차단에 관한 법제화를 진행해야 함

3. 비언론(인)의 영역의 가짜뉴스 논란

1) 사례

□ 사례1.

긴급상황(청와대 지시로 전국의 미곡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대부분 북한으로 보냄) 2018.09.21. / 다음 카페



출처: 다음 카페 화면 캡쳐

☞ 반박 기사 [김훈동칼럼] '농협양곡창고에 쌀이 없다'는 건 참말일까? 경기신문 | 승인 2019.07.03. 19:20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938



출처 : 경기신문 화면 캡쳐



□ 사례2



출처 : 경기신문 화면 캡쳐

2) 개선방안

- 비언론(인) 영역에서 가짜뉴스의 원천적인 근절은 사실상 어려움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 관계에 따른 규제를 둘러싼 찬반이 거셈
- 정치적 주제의 가짜뉴스와 경제적(경제, 민생 등) 주제의 가짜뉴스 영역을 구분하고, 우선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경제적 분야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을 추진
- 기존 법령 외 새 법령 도입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실익, 실효성 엄밀하게 따져봐야 함
- 시민가짜뉴스검증센터: 정치권, 기존 언론사 영역 아닌 시민사회 내 가짜뉴스검증센터 설립, 시민 주체의 가짜뉴스 근절 노력 확산

4. 미디어 영역의 가짜뉴스 규제 문제

- 1. 글로벌 미디어 영역: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 2. SNS 상 가짜뉴스 규제

5. 맺음말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과 규제 방안을 놓고 정치권, 언론계 등의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규제법안도 상당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정치 일정상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입법, 제도화하기에는 전망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언론(인)의 자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 자체의 자정과 성찰, 팩트체크 등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문법, 언론중재법, 김영란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한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계, 정치권, 학계, 언론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비언론(인)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제적 주제(경제, 민생, 인권 등)의 가짜뉴스에 대한 시민가짜뉴스검증센터 설립과 활동 등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 제도와 조직을 활용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의 가짜뉴스대책팀 출범과 활동은 실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미디어와 SNS상에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해서 방통위, 선관위 (선거 시기,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 활동) 등 관계기관 차원에서 해당 업계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III] '가짜' '뉴스' 에 대한 고찰

- 황성현 변호사 -



'가짜' '뉴스' 에 대한 고찰

- 황성현 변호사 -

1. 들어가기

○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뉴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또 기존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라디오·TV와 같은 전파매체들이 인터넷 매체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뉴스 전달자, 매개자가 생겼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뉴스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¹⁾

이에 다수의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합리적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하지만,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뉴스에 대해 국민들은 사안의 진위에 대해 판단할 틈도 없는 사이,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들이 퍼져 여론형성을 왜곡시키거나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지만, 인터넷 공간의 특징인 승자독식구조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 특정 포털에 의존하여 뉴스를 검색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예, 드루킹)에 의해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이 조작되어 올바른 여론형성이 왜곡되기도 함.

○ 대통령을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가짜 뉴스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하지만,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많으며, 가짜뉴스로 판정한 뒤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2.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법체계에 의한 제재

○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둠. 그 구체적 입법이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4조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명예훼복처분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임.

¹⁾ 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최진응. 「의정연구 제24권 제3호(통권55호)」



○ 형법에 의한 제한

형법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8조는 사자 명예훼손죄,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제311조는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비범죄화2하자는 논의가 활발함.

○ 민법에 의한 제한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 제754조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명예훼복처분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즉,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민법은 형법의 명예훼손범죄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비해 과실의 경우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제재뉴스의 경우 방송은 '방송법', 신문 인터넷신문 포털뉴스의 경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뉴스 보도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적 주장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함. 특히,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등을 침해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상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및 정부의 삭제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상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 성격의 허위 정보는 불법 정보로 간주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을 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또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언론사의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96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252조 제1항~제2항)
- 풍문 등을 통한 '부당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됨.

²⁾ 변호사 절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6. 5. 23.



3. 명예훼손이 아닌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입법안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짜뉴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과 민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음.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가짜뉴스에 대해 제재하고 있음.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 경제상황에 대한 왜곡, 실업률·취업통계 등에 대한 가짜뉴스, 외국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카더라' 등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됨.

-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채널에서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신랄하리만큼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판 중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정통 언론인 신문, 뉴스 등에서 보도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음.
- 수많은 채널들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는 정확한 취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뉴스도 있지만. 의혹제기 수준에 그치거나 통계를 오독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발의되었음.
 - ▶ 인터넷상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는 형사처벌하고, 선거 관련된 가짜 뉴스는 최초 유포자에 한해 형사처벌 하도록 하며 ▶가짜 뉴스 매개자의 책임으로 가짜 뉴스 삭제 의무, 가짜 뉴스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가짜 뉴스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두고 ▶ 언론사의 책임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조항을 둠. ▶가짜 뉴스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화 조항을 두고 있음.

4. '가짜뉴스'제제의 문제점

○ 가짜뉴스의 정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근절 법안들에 나와 있음. 즉, 가짜뉴스란 '언론 보도 형식의 허위 왜곡 정보^{3)'}, '허위의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4)'},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정보'⁵⁾등임

^{3)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완수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이은권 의원안, 송희경 의원안 등

⁴⁾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4쪽.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성태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안호영 의원안 등



- 외국의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6
- 그렇다면, 과연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및 오보와 패러디나 풍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지 못함. 오히려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규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임.
- 또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김성태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안호영 의원안, 이장우 의원안)의 경우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구분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⁷⁾ 당시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을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위헌판결을 내린 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판시

동 법의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공익"은 형벌조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 정보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가짜'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의 문제로 귀결됨. 이 경우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결국 이용자 스스로 표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과도한 사적 검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언론사에 대한 가짜 뉴스 시정명령 제도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 일부 뉴스나 정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를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⁶⁾ 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최진응. 「의정연구 제24권 제3호(통권55호)」

⁷⁾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5. 결론: 여론의 시장에서 자정기능을 강화 VS 형벌 규정 신설로 정부가 직접 규제

-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가짜뉴스'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으로 구전을 통해 유포됨. 당시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 이를 통제하고 제재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작용이 훨씬 더 컸음.
-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표현이라도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보호영역에 속함. 다만, 가짜뉴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형법과 민법,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함. 또한 짧은 선거기간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정한 선거가 방해 된다면 이 역시 제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 형식으로 만들어 독자나 시청자 등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가짜뉴스 제한되어야 함. 특히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행태를 보면 진짜뉴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유포는 등의 문제가 분명 있음.
- 다만, 가짜뉴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에 의해 제한하는 방법론은 전혀 다른 문제임. 거짓말을 비난하는 것과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음. 사기를 친 경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임.

지금 가짜뉴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는 것임.

- 즉,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오독하는 경우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처벌로 제재를 할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억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됨. 결국 자유로운 소통과 여론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위협받게 되는 것임.
- 이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언론에서 책임을 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함. 요즘 각 방송사와 종편 등에서 메인뉴스 시간에 이른바 '팩트체킹' 꼭지를 별로로 두는 것도 그 일환임.
- 가짜뉴스에만 현혹될 국민은 없음. 오히려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정권과 다른 생각이나 통계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임.

[토론IV]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방안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방안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1. 가짜뉴스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법률 제·개정안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한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며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안이다. 이후 송희경,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출되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가짜뉴스"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주된 유통경로로 알려진 SNS보다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가 오히려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통점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가 아닌 시정 권고제도를 활용하려한 점이다. 즉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3조(시정명령 요청)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quot;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가 인터넷·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중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소관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중재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의 범위를 넘어 언론보도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언론보도 등에 대해 현행의 시정권고 결정을 넘어 시정명령요청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언론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또는 언론조정신청이 없더라도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처음 나타났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가짜정보로 용어를 대체하며 "가짜정보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 정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가 되어 이들 기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가짜정보라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짜정보"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 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이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가짜정보" 규정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가짜정보"의 범위를 언론사의 오보와 개인이 퍼뜨린 인터넷 루머까지 포괄하고 있어 가짜뉴스 혹은 가짜정보의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둘째, 정보통신망상의 사실이 아닌 정보만을 가짜정보로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가짜정보라 할지라도 전달 매체에 따라 가짜 정보 여부가 달리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 할지라도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매체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가짜정보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셋째, 정정보도 대상이 된 기사 전체를 가짜정보라 볼 수 있는가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실관계가 오보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대부분인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 대상이 된 보도를 가짜정보라 규정짓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짜정보에 대한 판정 지연으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할 것을 직권조정결정한 법안상의 가짜정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 소제기로 간주된다. 법원 판결도 심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짜정보"의 최종 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력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해에 걸친 가짜정보 판정을 위한 법원 절차 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 자명하여 가짜정보의 유통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언론 개념의 확장 필요성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 체감속도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기에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진부할 지경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가늠하기 쉽지 않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흔히 불리우는 가짜뉴스는 과거와 달라진 미디어환경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손꼽힌다. 몇몇 지인들 사이에만 유통되던 찌라시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짜뉴스의 횡행과 왜곡된 여론의 형성의 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존 언론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을 발행하려면 윤전기나 인쇄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했다(언론기본법 21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뉴스생산과 유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뉴스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인터넷 신문의 충족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의 폐해가 크다며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던 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려 오히려 인터넷신문의 설립 요건을 한결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3인(취재기자 2인, 편집기자 1인)으로 돼 있는 인터넷 언론 취재 및 편집 인력 등록기준을 5인으로 상향조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보도하고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법적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또한 미디어 융합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법제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기존 언론의 큰 틀을 고수한 채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터넷은 활자매체와 영상매체의 경계를 넘나든다. 인터넷 미디어는 활자든 영상이든 모든 형식의 콘텐츠를 담아서 전달하며 쌍방향성까지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텍스트와 영상 콘텐츠가 혼재된 인터넷 미디어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짜뉴스의 생산·유통과 피해구제 방안

가짜뉴스 혹은 가짜정보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가짜뉴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살펴보았듯이 언론사의 오보와 개인이 퍼트린 조작 정보까지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피해구제의 시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짜뉴스의 법률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언론조정대상에 편입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기존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오보는 이미 언론조정대상이 되어 잘못된 보도의 경우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인터넷 유튜브 방송도 언론의 기능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에 포함 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진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SNS를 통해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부 인터넷 개인 방송(유튜브 방송)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 방송 가운데 현행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으로 해석,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짜뉴스의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든간에 인터넷 개인 방송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함한다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국한되므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자유 침해 논란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의견, 논평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파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 논평에 대해서만 언론조정대상에 편입하여 그릇된 여론 형성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조정신청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자와 해당 정보를 생산한 자와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통제 논란도 비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언론 중재법상 피해자는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과거 신문이나 방송 등



일회적인 보도양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정보를 담은 원 보도가 인터넷상에 남아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열람을 차단을 구하는 새로운 청구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토론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통신심의 관련규정

-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통신심의 관련규정

-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먼저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심도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진욱 변호사님의 발제문 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욱 변호사님의 발제문은 표현의 자유 중요성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김진욱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기 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직무 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통신심의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와 관련된 규정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요직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직무는 ①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②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심의,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⑤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등 입니다.

위원회 주요직무 중 통신심의의 경우,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형태로 공개·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통신심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통위 설치법

-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 · 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 · 공표한다.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시행령

-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용환경 변화, 1인 미디어 증가 등 매체 다양성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16. 1. 1. ~ 2019. 8. 30. /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도박	54,074	53,448	22,104	21,545	66,642	63,435	33,673	32,923
불법 식·의약품	35,938	35,920	18,571	18,556	49,464	49,250	32,327	32,195
성매매·음란	85,768	81,898	32,599	30,200	83,404	79,710	38,359	35,787
권리침해	8,944	7,783	3,475	3,168	18,746	17,572	17,455	16,354
기타 법령 위반	26,463	22,742	15,104	11,403	33,910	28,279	26,871	24,027
계	211,187	201,791	91,853	84,872	252,166	238,246	148,685	141,286

※ 기타 법령 위반: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금융 등

최근, 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KE NEWS, 가짜뉴스, 가짜정보, 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 및 거짓정보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루머, 사실에 풍자가 더해진 풍자정보, 언론의 오보, 음모이론 관점의 정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의로 조작한 정보 등 잘못된 정보들은 이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과거부터 존재했던 내용들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입장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 찬성 입장에서는 허위로 정보를 조작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가짜뉴스 규제 반대 입장에서는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들어 규제를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과 같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기존 언론사를 통해 유통된 '조작된 내용' 보도 또는 '오보' 기사 등 언론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그 밖의 인터넷 정보 중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통신심의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시정 요구의 종류 -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 이행 등)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허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명예훼손, 사회혼란 야기 등의 규정을 심의에 적용하면서 허위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정보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위원회가 권리침해 여부를 심의한 후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 단, 피해자가 권리침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두 번째, 사회혼란야기 정보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카목으로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과 관련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 위헌판결 ('10.12.28., 2008헌바157) 된 이후, 관련 법령 미흡으로 인해, 현행법상 단순한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유포' 자체로는 현행 법령 및 위원회 심의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4기 위원회에서는 사회질서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사안 등에 대해「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카목을 적용하여 총 69건에 대해 해당없음 67건(2건은 미유통 각하)을 결정하였습니다.

※ 2018년 ~ 2019년. 8월 기준으로, 일반 게시정보에 대한 심의였으며, 언론보도 형태를 가진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음



■ '2008헌바157'위헌결정(2010년) 관련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 위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 제정 후, 1983년 전기통신기본법 으로 개정되었으며, 약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였음.
- 2008년 검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하였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해당 규정은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짐.
- 헌재는"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당시, 위헌 결정 후, 국회 등에서는 대체입법 발의가 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상존하였음.
 - ※ 법무부는 대체입법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한국경제, 2011.3.1.)

4기 위원회 출범 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카목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를 적용하여 시정요구 한 사례가 없다는 의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모든 표현을 규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 표현 정도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심의를 하는 독립 심의기구로서, 심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실 확인이 안된 내용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왜곡시키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는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VI]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

MEMO

MEMO